

의안번호	제 389호
의 결 년 월 일	2001. 2. . (제184회)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년월일	2001. 2. .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2. .
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 관련부서 : 총 무 과

개정사유

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초·중·고등학교에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지역교육청의 정보화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1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은 12명으로 하며,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3조)
-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개정근거
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
-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조직·인력 보강 계획
[교육부 지교81413-1042('00.11.2)]

개정 조례안 : 붙임

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
- 관계법령 발췌서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다음에 “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를 삽입한다.

제3조를 제4조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한시정원)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12명으로 하며,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한시정원의 유효기간) 제3조의 한시정원 유효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 제19516호)

제17조(한시정원)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교육감은 총 정원을 초과하여 한시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.

④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.

⑤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하고,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(교육부령 제725호)

제2조(한시기구의 설치 및 한시정원의 책정) 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이하 영“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두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유·존속기간 및 그 배경설명서
2. 총 정원을 초과하는 한시정원 소요내역 및 기존정원의 활용방안
3.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과정표
4. 1인당 업무량 산출표
5. 당해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
6. 사무실 확보·활용계획서 및 예산조치 계획서

②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존속기간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

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3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